

2017년도 철도장비 1년 검수 시행계획

5~8호선에서 운영중인 철도장비의 1년 검수 및 특수차 매연측정을 시행하여 효율적인 장비운행을 도모하고 터널내 공기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.

I 관련근거

- 철도장비관리 및 검수예규
-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「제28조 특정 경유 자동차의 배출 허용기준」
- 기술본부장-514('17.09.20) 「예방점검 및 정비체계 구축을 위한 특수차 점검 및 정비운영 계획(안)」

II 대상장비

- 철도장비 1년 검수대상 현황 : 251대
 - 철도장비 : 44대

구 분	계	특수차	배터리 점검차	모 터 카		비고
				토목	신호	
계	44대	8	2	20	16	
장비2팀	28	8		4	16	
토목2사업소	16	-	2	14	-	

- 철도경장비 : 207대
 - 트레일러, 트로리 등 : 116대
 - 임팩트렌치 등 10종 : 91대
- 소속별 보유장비 현황 : 붙임 참조

III

시행계획

시행기준

- 검수기준 : 1년간 전후 시행
- 검수시행

구 분	특수차	모터카	트레일러·경장비	비고
검 수 자	운용소속 자체시행 (장비2팀)	운용소속 자체시행 (토목2사업소) (장비2팀)	운용소속 자체시행 (토목2사업소) (장비2팀)	

- 검수항목 : 철도장비관리 및 검수예규 [별표1] 검수항목 및 주기표
- 검수방법 : 철도장비관리 및 검수예규 [별지 제1호 서식] 검수

시행기간 : 12.31일까지(기간중 시행)

IV

매연측정

측정계획

- 허용기준 :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[별표7]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 허용기준에 준하여 측정 시행
- 허용기준 : 무부하 검사방법(광투과식)

차 종	제작일자	매연 (무부하 급가속검사)
차량 총중량 3.5톤 이상 자동차	2000.12.31 이전	20% 이하
	2001.01.01 이후	15% 이하

※ 매연측정은 기 보유중인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사용

측정개요

- 시행일시 : 1년 검수시 병행 시행
- 대상장비 : 경유 사용 특수차 8대 및 토목 모터카 20대
- 측정부서 : 운용소속 자체 시행
- 측정방법 : 무부하 급가속 검사(매뉴얼 참조)

V

행정사항

- 검수결과 보고
 - 철도장비 1년 검수 결과 Utims 입력 및 검수 소속별 자체보고
 - 철도장비 정비에 따른 장비이력 사내전산망 등록 관리
 - 1년 검수(모터카) 및 매연측정 결과 장비2팀 송부(문서시행)
- 검수결과 조치
 - 철도장비 자체정비 가능할 시 → 자체정비 시행
 - 철도장비 자체정비 어려울 시 → 외주정비 의뢰(장비2팀)
 - A/S 기간내 해당되는 장비는 해당제작사 점검 및 수리요청
- 매연측정 조치
 - 1차 측정기준치 초과 시
 - 관련계통 자체정비 후 1개월 이내 2차 측정 실시
 - 2차 측정기준치 초과 시
 - 외주정비 의뢰 등 매연 저감대책 강구

VI

결론

- 철도장비관리 및 검수예규에 의거 1년 검수를 시행하여 철도장비 고장예방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,
- 경유 사용 특수차에 대한 매연측정을 실시 기준치 초과 시 매연저감대책을 강구 터널내 공기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붙임 : 1. 1년 검수대상 철도장비 현황 1부.
2. 철도장비 검수항목 및 검수표 1부.
3. 매연측정 기준 및 방법(매연측정 점검표) 1부. 끝.